

#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18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1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평창군에 주소를 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본계획(안 제4조)
- 라.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(안 제6조)
- 마. 행정적·재정적 사업(안 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  - 1) 입법예고(2019. 9. 2. ~ 2019. 9. 22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 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(기획감사실-10241, 2019.08.21.)
  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감사실-10241, 2019.08.21.)
 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의견 미반영(주민복지과-57974, 2019.08.30.)
  - 5)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(기획담당관-2208, 2019.10.28.)

##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에 따라 평창군에 주소를 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평창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
2. “일자리 창출”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군수의 책무)**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군수는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)**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지원을 위해 매년 청년일자리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 및 방향
2. 청년 구직자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
3.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4.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실태조사)** ① 군수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·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.

**제6조(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)**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구인·구직 등록 및 알선 등 채용 정보 제공
2. 새로운 청년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육성
3.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이바지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
4.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

**제7조(관계기관 등과의 협력)**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·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**제8조(업무의 위탁)**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,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**제9조(행정적·재정적 사업)**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1]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청년고용촉진 특별법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,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, 직업 지도,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붙임 2]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.

#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
연락처	(033) 330 - 2540